



2018학년도 수시 재외국민 모집요강

[수원·서울캠퍼스 공통]



입 학 처

▣ 건 학 이 념

眞(진) · 誠(성) · 愛(애)

▣ 교 육 이 념

지성 · 덕성 · 감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율적 인격을 갖추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 교 육 목 적

- ▶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기계발에 정진하는 교양인 양성
- ▶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조적 전문인 양성
- ▶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인 양성
- ▶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봉사인 양성

▣ 교 육 목 표

- ▶ 근면·성실한 태도와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올바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문적 지식의 습득과 창의적 응용능력 함양
- ▶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성과 리더십 함양
- ▶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과 인간애의 실천 의지 함양

■ 목차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2. 원서접수 안내	6
3. 전형일정	7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7
5.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가. 영주교포 자녀	8
나.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9
다.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10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11
마.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12
바. 기타 재외국민 자녀	13
사.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4
아. 12년 전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15
자. 북한이탈주민	15
6. 각종 지원자격 인정기준	16
7.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18
8. 선발방법	18
9. 서류평가 반영방법	18
10. 면접고사 반영방법	18
11. 서류제출 안내	19
12. 지원자 유의사항	21
1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21
14. 전형료 안내	22
15. 전형료 반환 기준	22

▣ 각종서식

[서식 1] 자기소개서 양식	24
[서식 2] 학력조회 동의서	25
[서식 3]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26
[서식 4] 제3국수학사유서	27
[서식 5] 재학기간 심사표	28
[서식 6] 외국학교 현황표	29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계열	코드	모집단위(학부/학과)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인문계	12	국어국문학과	57		√	
		13	영어영문학과	84	5	√	
		14	중어중문학과	31	3	√	
		15	사학과	32		√	
		16	문헌정보학과	34		√	
		17	문예창작학과	24	1	√	
		18	글로벌 어문학부	독어독문전공 불어불문전공 일어일본전공 러시아어문전공	127	1	√
	예체능계	19	서양화·미술경영학과	40		√	
		20	한국화·서예학과	40		√	
		21	입체조형학과	40		√	
		22	디자인 비즈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장신구·금속디자인전공	65		√
		23	스포츠 과학부	스포츠건강과학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레저스포츠전공 시큐리티매니지먼트전공	150	5	√
		24	체육학과	33		√	
	인문계	25	법학과	67		√	
		26	행정학과	85	3	√	
		27	경찰행정학과	30	3	√	
		28	휴먼 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정보호전공 청소년전공	115	6	√
		29	국제관계학과	31		√	
30		국제산업정보학과	23		√		
31		경제학부	경제전공 응용통계전공	134	1	√	
32		지식재산학과	33		√		
33		경영학과	165	5	√		
34		무역학과	97	3	√		
35		회계세무· 경영정보학부	회계세무전공 경영정보전공	102	2	√	
자연계	36	수학과	35		√		
	37	전자물리학과	32		√		
	38	화학과	35		√		
	39	바이오 융합학부	생명과학전공 식품생물공학전공	80	1	√	
	40	컴퓨터공학부	154		√		
	41	토목공학과	67	1	√		

캠퍼스	계열	코드	모집단위(학부/학과)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수원 캠퍼스	자연계	42	건축학과(5년제)	55	1	√
		43	건축공학과	40	1	√
		44	도시·교통공학과	45	1	√
		45	신소재공학과	69	1	√
		46	환경에너지공학과	64	1	√
		47	화학공학과	42	1	√
		48	산업경영공학과	73	1	√
		49	전자공학과	79	2	√
		50	기계시스템공학과	70	2	√
	수원캠퍼스 소계				2,598	51
서울 캠퍼스	인문계	51	관광경영학과	72	1	√
		52	관광개발학과	38	1	√
		53	호텔경영학과	37	1	√
		54	외식·조리학과	38	2	√
		55	관광이벤트학과	41	1	√
	예체능계	56	연기학과	26		√
		57	애니메이션영상학과	19		√
		58	전자디지털음악학과	19		√
		59	미디어영상학과	38		√
서울캠퍼스 소계				328	6	
합계				2,92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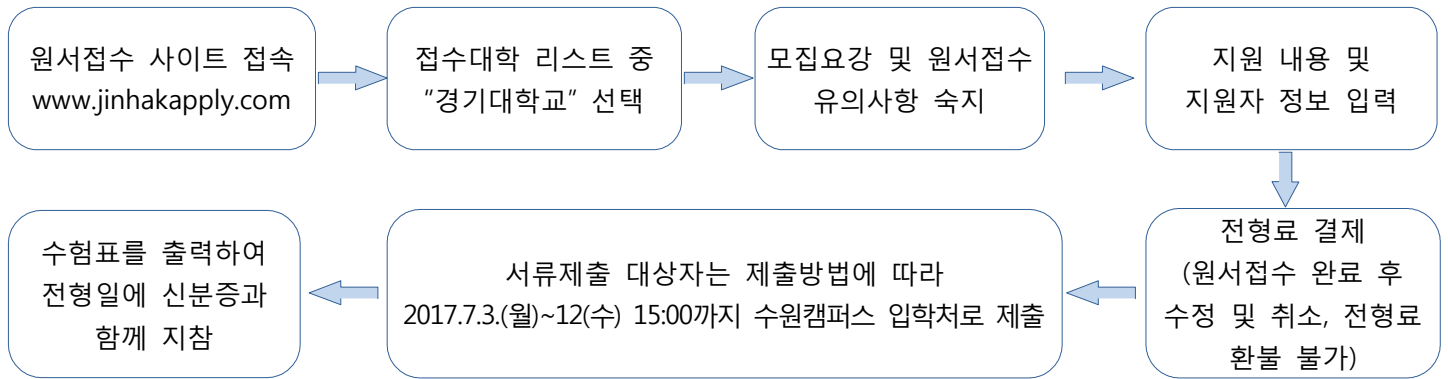
- ※ 대학 구조개혁 등에 따라 단과대학, 모집단위(학과) 및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모집인원의(√) 표시는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표시이며,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 ※ 국제산업정보학과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 ※ 수원캠퍼스 컴퓨터공학부,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는 공학교육인증제로 운영합니다.
- ※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 없이 공정한 선발절차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국제교류팀(031-249-8773)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원서접수 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2017. 7. 3(월) ~ 6(목) 17:00 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형식)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입학원서 접수마감 시한[2017.7.6.(목) 17:00]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한까지 원서접수를 못하는 것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 2)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 환불 및 전형유형, 지원학과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전형기간 중 가장 신속히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학처에 전화하여 수정 요청합니다.
- 4)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제출서류 미비, 제출기한 초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5) 전형일 및 지원자격 등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6)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접수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 원서관리'에서 재출력 합니다.

라. 원서접수 문의사항 : 경기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 1) 전화 : 031) 249 - 9997~9
- 2) 팩스 : 031) 249 - 8757
- 3) 홈페이지 : <http://enter.kyonggi.ac.kr>

3.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7. 7. 3(월)~6(목) 17:00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자기소개서 입력		2017. 7. 3(월)~7(금) 17:00까지	
서류제출 기간	우편접수	2017. 7. 3(월)~10(월)까지	마감 당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
	방문접수	2017. 7. 10(월)~12(수) 15:00까지	
고사장 조회		2017. 8. 4(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면접고사		2017. 8. 10(목) 09:00-14:00	수원캠퍼스에서 실시

※ 전형일정은 수원캠퍼스, 서울캠퍼스 공통입니다.

※ 면접고사는 수원캠퍼스에서 실시되며 고사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장소 : (우)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입학처 입학담당자 앞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구분		발표일정	비고	
최초합격자	발 표	2017. 08. 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예치금 납부	2017. 12. 18(월)~21(목)		
1차 충원합격자	발 표	2017. 12. 21(목) 21:00이후		
	예치금 납부	2017. 12. 22(금) 16:00까지		
2차 충원합격자	발 표	2017. 12. 22(금) 18:00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통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예치금 납부	2017. 12. 26(화) 16:00까지		
3차 충원합격자	발 표	2017. 12. 26(화) 18:00이후		
	예치금 납부	2017. 12. 27(수) 11:50까지		
4차 충원합격자	발 표	2017. 12. 27(수) 21:00까지		
	예치금 납부	2017. 12. 28(목) 16:00까지		
잔여등록금 납부		2018. 01. 31(수)~02. 02(금)	최초 및 충원합격자 공통	

가. 합격자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충원합격자는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충원합격자로 발표합니다.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화 개별통보 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3회 이상 통화시도) 미등록 처리되며 차순위자를 선발합니다.

라.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잔여등록금 완납 포함)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등록방법은 합격자 발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사.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 차액을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5.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영주교포 자녀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	거주	체류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학 생	2	2	2
	보호자	-	2	1
	배우자	-	2	1

3) 세부사항

-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영주권 취득 및 국내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야 함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본인 및 부모
⑧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모
⑨	재외국민등록필증	본인 및 부모
⑩	영주권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부모 ▪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⑪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⑫	부모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해당자에 한함
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해당자에 한함
⑭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시)	해당자에 한함
⑮	제3국 수학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p. 27 참조)
⑯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근무	거주	체류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 및 주재원의 자녀	학 생	2	2	2
	보호자	2	2	1
	배우자	-	2	1

3)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사무소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 언론기관 특파원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모
⑧	재외국민등록필증	본인 및 부모
⑨	보호자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근무기간 명시
⑩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원본대조 확인본
⑪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⑫	부모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해당자에 한함
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해당자에 한함
⑭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시)	해당자에 한함
⑮	제3국 수학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p. 27 참조)
⑯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근무	거주	체류
외국에서 2년 이상(실제 체류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	학 생	2	2	2
	보호자	2	2	1
	배우자	-	2	1

3)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모
⑧	재외국민등록필증	본인 및 부모
⑨	보호자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근무기간 명시
⑩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⑪	부모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해당자에 한함
⑫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해당자에 한함
⑬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시)	해당자에 한함
⑭	제3국 수학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p. 27 참조)
⑮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근무	거주	체류
외국에서 2년 이상(실제 체류기간 1년 이상)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학 생	2	2	2
	보호자	2	2	1
	배우자	-	2	1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의 범위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기타 국가기관·지방정부·국영기업체 등은 제외
- 해당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등도 제외

▪ 국제기구의 범위

-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모
⑧	재외국민등록필증	본인 및 부모
⑨	보호자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근무기간 명시
⑩	보호자의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사실 증빙서류	
⑪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⑫	부모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해당자에 한함
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해당자에 한함
⑭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시)	해당자에 한함
⑮	제3국 수학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p. 27 참조)
⑯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근무	거주	체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학 생	2	2	2
	보호자	2	2	1
	배우자	-	2	1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모
⑧	재외국민등록필증	본인 및 부모
⑨	보호자 재직증명서	해외 판건 근무기간 명시
⑩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⑪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⑫	부모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해당자에 한함
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해당자에 한함
⑭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시)	해당자에 한함
⑮	제3국 수학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p. 27 참조)
⑯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외국의 중·고등학교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근무	거주	체류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현지법인, 자영업, 취업, 출장 등의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자의 자녀 (선교사, 유학생 제외)	학 생	2	2	2
	보호자	2	2	1
	배우자	-	2	1

3) 세부사항

- 해외근무 상사직원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모
⑧	재외국민등록필증	본인 및 부모
⑨	보호자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근무기간 명시
⑩	현지법인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⑪	법인세 납부증명서	보호자가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⑫	보호자 과세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보호자가 현지법인 근무자일 경우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⑬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⑭	부모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해당자에 한함
⑮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해당자에 한함
⑯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시)	해당자에 한함
⑰	제3국 수학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p. 27 참조)
⑱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2) 자격사항 및 최소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기간

자격사항	대상	재학/근무	거주	체류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4학기)이상 이수한 자(이중국적자 제외)	학 생	2	2	2
	보호자	-	-	-
	배우자	-	-	-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⑧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취득내용 기록되어야 함
⑨	외국인등록증 사본	
⑩	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⑪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⑫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12년 전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외국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내국인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인정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외국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⑥	학력조회동의서	본교소정양식 (p. 25 참조)
⑦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본교소정양식 (p. 26 참조)

북한이탈주민

가. 지원자격

1) 학력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
②	재학기간 심사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③	외국학교 현황표	원서접수 후 출력
④	초·중·고등학교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해당자에 한함
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군구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⑥	북한이탈주민 학력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6. 각종 지원자격 인정기준

구분	지원자격 인정기준
외국학교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단,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외국학교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지원자의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은 주된 보호자의 해당국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한다. ▪ 외국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 신입학(3월 편입학 포함)한 경우 해당 외국 고등학교 과정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경우는 인정한다. 단,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시까지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한 학기 중에서 높여서 전·편·신입학한 학기수가 낮추어서 전·편·신입학한 학기수 보다 1개 학기를 초과할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외국학교 간 재학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외국학교 재학년수에서 중복된 학기를 1개 학기 이수기간으로 보며, 학제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국내와 국외의 재학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1개 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국내 학교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제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중복된 학기 중에서 중복된 학기과정이 하급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인 경우는 이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이 과정의 중복된 과정은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정규과정과 동시에 이수한 경우는 학기로 인정한다. ▪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의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한다. 단, 해당 학기 수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학하여야 한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은 졸업예정일까지로 한다. ▪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한다. ▪ 월반 또는 조기 졸업 및 재학년수가 12년에 미달되는 경우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모의 외국 영주·거주·근무·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외국에 상근하는 형태만 인정한다. (유학, 단기교육, 연수, 출장 제외) ▪ 영주기간 :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부터 자격 인정 기준 시점까지 당국에 영주하는 기간. 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근무기간 : 해외주재국 인사발령일자로부터 인사발령상의 근무종료일까지의 기간 ▪ 거주기간 : 영주 또는 근무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첫 출국일과 마지막 입국일까지의 기간 ▪ 체류기간 : 영주 또는 근무 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지원자격 인정기준																																																		
외국의 교육과정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 \ 교육연한</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4년</th> <th>5년</th> <th>6년</th> <th>7년</th> <th>8년</th> <th>9년</th> <th>10년</th> <th>11년</th> <th>12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우리나라 학제로 환산한 학교 과정</td> <td colspan="6">초등학교 과정</td> <td colspan="3">중학교 과정</td> <td colspan="3">고등학교 과정</td> </tr> </tbody> </table> 2.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학년제</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10학년 이하</td> <td>미인정</td> <td rowspan="4">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11학년제</td> <td>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12학년제</td> <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13학년 이상</td> <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 교육연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한 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구분 \ 교육연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한 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p>*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자격 인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일자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단, 북한이탈 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지원 가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과 사실관계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 및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계산한다. 																																																			
기타사항																																																			

7.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유형		서류평가	면접고사	합계
재외국민	영주교포자녀	50점 (50%)	50점 (50%)	100점 (100%)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해외근무공무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	100점 (100%)	100점 (100%)
북한이탈주민		-	100점 (100%)	100점 (100%)

※ 해당 전형 미응시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선발방법

가. 재외국민(정원외 2%)

- 1) 모집단위의 선발인원을 서류평가 성적(50%)과 면접고사 성적(50%)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에 따라 선발합니다.
- 2) 별도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총점 ② 면접고사 성적 ③ 서류평가 성적

나.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완전정원외)

- 1)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면접고사 성적 순위와 상관없이 선발합니다.
- 2) 면접고사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3)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선발

다. 기타 사항은 본교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9. 서류평가 반영방법

가. 반영대상 : 재외국민(정원외 2%)

나.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등

다. 평가내용 : 학습계획, 포부, 인성, 전공기초 및 전공관심도에 대해 평가

10. 면접고사 반영방법

가. 면접반영대상 : 재외국민(정원외 2%),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북한이탈주민(완전정원외)

나. 평가방법

- 1)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잠재적인 학습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 및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평가한다.
- 2) 개별면접으로 진행된다.
- 3) 면접위원 2명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평가내용 : 일반소양(의사소통능력, 가치관 및 인성), 전공소양(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에 대해 평가

11. 서류제출 안내

가. 지원자격 심사서류 제출기간

- 1) 우편접수 제출기간 : 2017. 07. 10(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우)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입학처
- 2) 방문접수 제출기간 : 2017. 07. 10(월) ~ 12(수) 09:00 ~ 15:00 방문접수 장소는 추후 공지

나. 서류제출 공통사항

- 1) 지원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순서대로 철합니다.
- 2) 지원서류 제출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방문접수하여 원본대조확인 후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단, 사본을 제출한 자는 추후 합격하여 등록하면 2017년 12월 21일(목)까지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혹은 영어번역(공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및 고교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 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은 제외
※ 아울러 중국 국적의 지원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서울공자아카데미(<http://www.cis.or.kr>, 02-3452-6775)에서 고등학교 관련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본교에 제출.
- 5)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자녀가 재학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해당 기간은 재외국민 자격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함
- 6)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7) 제출서류 이외에 자격심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우편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본교에 책임이 없습니다.

■ 재외 한국학교 현황 (2016.3월 기준)

지역	국가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국학교, 젯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

외국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간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2)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1)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2)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6.08.30.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 외교부 02-2100-7600 또는 법무부 02-720-8027에 문의할 수 있음

12.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 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층원 합격자)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합니다.
- 하나의 전형유형에 다수의 모집단위(학과)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확인예치금(또는 문서등록)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은 무효로 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다) 기본 유의사항

- 원서접수 이후에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자격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 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교 캠퍼스는 수원캠퍼스, 서울캠퍼스로 구분하며, 전과는 캠퍼스의 구분 없이 허가합니다.
다만,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및 체육특기자, 농어촌학생[정원외], 특성화고졸업자[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불허합니다.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1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가) 신청기간 : 2017. 12. 22(금) ~ 27(수) 21:00 까지

나) 신청절차 : 인터넷으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1)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성명 및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번호 입력하여야 합니다.
- (2)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교 입학처로 우선 등록포기의사를 밝힌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합니다. ① 등록금 영수증 ② 수험생 신분증 ③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3)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수험생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로그인하여 환불 신청을 하고, 신청 후에는 신청확인서를 출력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 (2) 환불완료 확인은 환불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14. 전형료 안내

전형유형	전형료		접수 수수료	결제총액
	서류심사료	면접고사료		
재외국민,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55,000원	30,000원	5,000원	90,000원
북한이탈주민	-	30,000원	5,000원	35,000원

15. 전형료 반환 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 피해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전형료 반환은 원서작성 시 기재한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본인착오에 의한 전형일정 중복, 단순변심 및 결시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및 신청기간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함 	2017. 7. 12(수)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함 	2017. 8. 11(금)까지

나) 전형료 일부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 2017. 8. 11(금)까지 신청분에 한함

구분	반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등)의 발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서류심사 불합격자대상자 	

다)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2)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작성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3)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서식 ▣

[서식1] 자기소개서 양식	24
[서식2] 학력조회 동의서	25
[서식3]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26
[서식4] 제3국수학사유서	27
[서식5] 재학기간 심사표	28
[서식6] 외국학교 현황표	29

자 기 소 개 서

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함
(1,000자 이내)

문항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함
(1,500자 이내)

문항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함
(1,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는 A4 용지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증빙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력 조회 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 School Name :
- School Adress :
- Zip Code :
- School E-mail Adress :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Kyonggi University in Korea for 2017 academic year and agreed that this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cooperation to Kyonggi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the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incerely yours, (name)_____

(Signature)_____

- Student Name : _____
- Student ID Number : _____
- Date of birth : ____ - ____ - ____ (mm-dd-yyyy)
- Date of admission(transfer) : ____ - ____ - ____ (mm-dd-yyyy)
- Date of graduation(withdrawal) : ____ - ____ - ____ (mm-dd-yyyy)



KYONGGI UNIVERSITY

Suwon Campus :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Seoul Campus : 24, Kyonggidae-ro, Seodaemun-gu, Seoul, Korea
 Web Site : www.kyonggi.ac.kr

[서식. 사실증명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3.1.1>

수험번호: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31-249-9999	대상자와의 관계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증명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국민]	[] 병기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기함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용 도	대학입학전형 지원 자격 확인	제출처 경기대학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읍장 · 면장 · 동장

귀하

위 임 장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위 서식은 경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의 지원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 '신청인'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란을 모두 채워주시고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세요.

1.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2.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한합니다.
3.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 100만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채권자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제3국수학사유서

수험번호	-	성명	
지원학과	<수원·서울> 캠퍼스		학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학생의 수학국가가 보호자의 근무국가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근무국가		학생 수학국가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학생의 해외수학기간	

※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학생의 수학국가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국가명과 국가에서의 수학기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국 수학 사유	수학 사유 심사후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7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수험번호	-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재학기간 심사표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 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자녀 <input type="checkbox"/> 상사직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재외국민 자녀(<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학 교 명(영문)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출국기간 (방학기간 포함)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년 개월															~
	~	년 개월															~
	※ 본 양식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 것																
	~	년 개월															~
고등학교까지 총재학기간		년 개월	전체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구 분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특이사항
	기 간	거주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부 (父) 성 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모 (母) 성 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_____ (인) 지원자와의 관계 :

수험번호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 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자녀 <input type="checkbox"/> 상사직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재외국민 자녀(<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학교명	국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FAX	비 고
	※ 본 양식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 것					

-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를 심사표에 기재한 순서대로 기재
- ※ 학교명 및 주소는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
- ※ 전화번호 및 Fax 번호는 국가코드, 지역코드를 포함하여 기재